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42호 2024. 8. 1.(목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4-1452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24-1482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8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24 - 1452호

『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26일

남 원 시 장

**『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』
일부개정조례안**

1. 개정이유

남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로자 및 장애인의 개인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감면조례안 신설(안 제12조 3항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7. 27. ~ 2024. 8. 5. (1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, 개인은 2024년 8월 5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교육체육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: 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교육체육과

다. 의견 제출 방법

: 서면, 이메일(dmsr5128@korea.kr), fax(063-620-6708) 및 직접방문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(☎063-620-56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『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4. 7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: 교육체육과장

1. 개정이유

남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개인사용료 감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감면 조례안 추가(안 제12조 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4. 7. 27. ~ 2024. 8. 5.(1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

5) 부패영향평가: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
- 12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자가 이용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</p> <p>12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자가 이용하는 경우</p>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「남원시 의안의
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남원시 공고 제2024-1482호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31일

남 원 시 장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내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 놀이터 및 에코큐브 개관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 징수 등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·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조항 수정 (안 제2조)
- 나.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07. 31. ~ 08. 09. (10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8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산림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: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백두생태교육장 전시관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직접방문, 전자메일(applekwang@korea.kr)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산림녹지과 백두생태팀 담당자 김의영(전화 : 063-620-575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4. 7. 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산림녹지과장

1. 개정이유

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내 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 놀이터 및 에코큐브 개관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 징수 등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·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조항 수정 (안 제2조)
- 나.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4. 7.31 ~ 2024. 8. 9
 - 결 과 :
 - 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 - 3) 규제예비심사 : 완료
 - 4) 성별영향평가 : 완료
 - 5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, 서클영상관, 곤충온실을”을 “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, 서클영상관, 곤충온실, 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, 생물테마전시(에코큐브)시설을”로 한다.

2. “생태교육장 전시관”이란 전시시설, 곤충온실, 물 놀이터,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, 유아숲체험원, 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, 생물테마전시(에코큐브)시설을 말한다.

제8조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
17. 「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
18. 「남원시 국·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
19. 「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또는 「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시민(도민)증을 소지한 사람

별표 1,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만 [별표1]에 생물테마전시(에코큐브), 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 체험시설 이용료는 2024.10.01.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입 장 료 (제7조 관련)

구분	입장료(관람료)						비 고
	어른		청소년·군인		어린이		
	개인	단체	개인	단체	개인	단체	
전시관	2,000원	1,500원	1,500원	1,000원	1,000원	500원	- 어른 : 19세 이상 64세 이하 - 청소년·군인 :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- 어린이 : 7세 이상 12세 이하 - 단체 : 20명 이상
연계 할인	1,000원	800원	800원	500원	500원	300원	

※ 연계할인은 광한루원, 춘향테마파크, 남원항공우주전문대, 지리산허브밸리 중 1개 이상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체험시설 이용료 (제7조 관련)

구분	시설이용료						비 고
	어른		청소년·군인		어린이		
	개인	단체	개인	단체	개인	단체	
호랑이 라이더관	1,000원	500원	1,000원	500원	1,000원	500원	- 어른 : 19세 이상 64세 이하 - 청소년·군인 :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- 어린이 : 7세 이상 12세 이하 - 단체 : 20명 이상
서클영상관	2,000원	1,500원	2,000원	1,500원	1,500원	1,000원	
곤충온실	1,000원	500원	1,000원	500원	1,000원	500원	- 6세 이하(미취학 아동) 무료
생물테마전 시(에코큐브)	7세이상 5,000원						
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	어른(보호자)		6세 이하(미취학 아동)				- 어른(보호자) 1인 무료 - 3세 미만 무료
		5,000원					
로봇자판기, 라면조리기, 스넥자판기	커피, 음료		라면		스넥		선택형 체험
	실비		실비		실비		

통합입장료 (제7조 관련)

구분	통합입장료						비 고
	어른		청소년·군인		어린이		
	개인	단체	개인	단체	개인	단체	
통합 입장료	5,000원	3,000원	4,000원	2,000원	3,000원	2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른 : 19세 이상 64세 이하 - 청소년·군인 :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- 어린이 : 7세 이상 12세 이하 - 단체 : 20명 이상

※ 통합입장료 : 전시관과 체험시설 3종(호랑이 라이더관, 서클영상관, 곤충온실)을 이용할 경우 할인된 입장료임

[별지 제1호서식]

이 용 권(제7조 관련)

6. 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

편 철 부 분	NO. _____			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 이용권			NO. _____										
	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 이용권(보관용)						(대표사진)										
	이용료(관람료)						이용료(관람료)										
구분	어른(보호자)		6세 이하(미취학 아동)		비		고		구분	어른(보호자)		6세 이하(미취학 아동)		비		고	
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			5,000		-		어른(보호자) 1인 무료 - 3세 미만 무료		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			5,000		-		어른(보호자) 1인 무료 - 3세 미만 무료	
년 월 일									년 월 일								
남 원 시 장									남 원 시 장								
2cm		6cm						12cm									

7. 생물테마전시(에코큐브)시설

편 철 부 분	6cm	NO. _____	620cm	생물테마전시(에코큐브)시설 이용권 NO. _____
	생물테마전시(에코큐브)시설 이용권(보관용)		절 취 선	(대표사진)
		2cm		12cm
		6cm		
		6cm		

구분	이용료(관람료)			비 고
	어른	청소년·군인	어린이	
생물테마 전시 (에코큐브)	5,000			-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무료

구분	이용료(관람료)			비 고
	어른	청소년·군인	어린이	
생물테마 전시 (에코큐브)	5,000			-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무료

년 월 일

남 원 시 장

년 월 일

남 원 시 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<u>생태교육장 전시관</u>”이란 전시시설, 곤충온실, 물 놀이터, <u>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,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.</u></p> <p>3. ~ 6. (생 략)</p> <p>7. “<u>체험시설 이용료</u>”란 <u>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,서클영상관, 곤충온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생태교육장 전시관</u>”이란 전시시설, 곤충온실, 물 놀이터, <u>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, 유아숲체험원, 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, 생물테마전시(에코큐브)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, 서클영상관, 곤충온실, 백두대간 위케이션 숲속놀이터, 생물테마전시(에코큐브)시설을</u> 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입장료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~ 1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입장료 면제)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에 따른 <u>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</u></p> <p>17. 「<u>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우대 및 지원 조례</u>」에 따른 <u>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</u></p>

<신 설>

18. 「남원시 국·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

<신 설>

19. 「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또는 「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시민(도민)증을 소지한 사람

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